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
· 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
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8월 24일

서울특별시 중구 청



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·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 (안 제1조)
- 구청장의 책무 (안 제2조)
-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· 운영 (안 제3조)
- 지원단의 구성 및 단장의 임무 · 권한 (안 제4조, 제5조)
- 실무팀의 편성 (안 제6조)
-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(안 제7조)
-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(안 제8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동정부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동정부과, 전화 : 02-3396-4564, 팩스 : 02-3396-8612, email : kno219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구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) 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지역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
2.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3. 자원봉사자의 규모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

능성

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
제4조(지원단의 구성)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원단의 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은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선임된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(이하 “자원봉사센터”라 한다)의 장이 겸임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.

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

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
3. 「재해구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
4.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5조(단장의 임무·권한)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

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,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
1. 상황총괄팀
2. 활동관리팀
3. 긴급구호팀
4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
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,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
② 지역대책본부장은 「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」

제26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.

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8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

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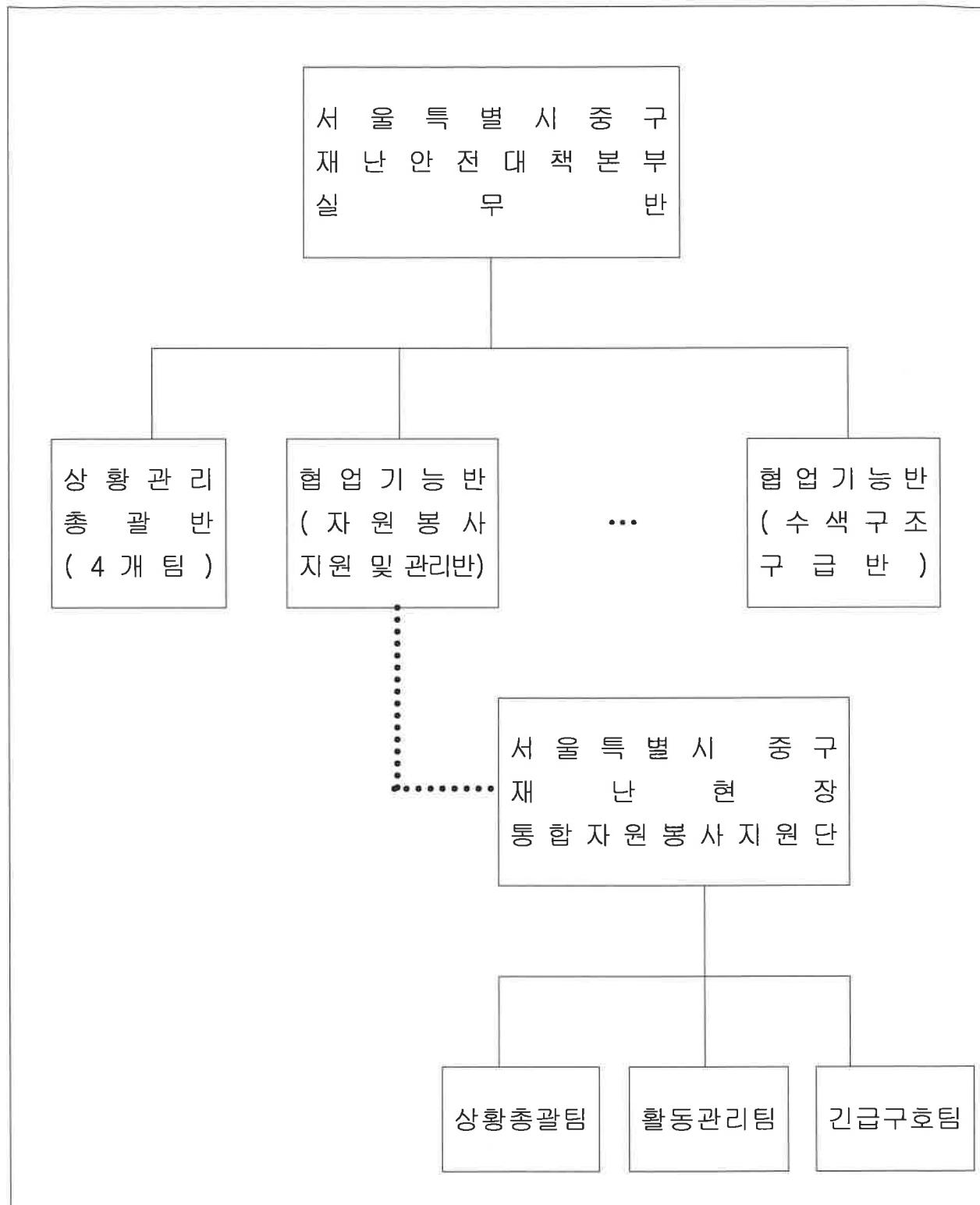
1.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
2.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
3. 자원봉사활동의 사진·영상
4.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
5.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지원단 운영 편제(제6조제2항 관련)



[별표 2]

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(제6조제2항 관련)

< 직무분담표 >

팀명(예시)	직위	담당 사무
단장	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·운영 총괄 ▶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(상황공유·보고 등) 총괄 ▶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행·재정 지원 사항 총괄
상황총괄팀	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재난 현장 자원봉사 지원·관리 총괄 ▶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상황 관리 및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필요사항 발굴·지원
	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자원봉사활동 수요 조사 ▶ 재난피해자 등의 불편 사항 접수 및 해결 ▶ 자원봉사활동 기록(모니터링, 평가 등) ▶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자 확보
활동관리팀	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자원봉사자 모집·등록·교육·배치 총괄 ▶ 협업 기능별 자원봉사 활동 관리 총괄 ▶ 자원봉사자 안전 확보 ▶ 중앙, 지자체, 유관기관 지원 요청
	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자원봉사자 모집·등록·교육·배치(일별, 분야별) 지원 ▶ 자원봉사활동 안내 및 상담 ▶ 자원봉사활동 물품 지원 등 복지 제공 ▶ 자원봉사자 상해나 질병시 지원 ▶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
긴급구호팀	대한적십자사 중구지부협의회 회장 및 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재난·재해현장 패해 복구활동 ▶ 이재민 대피소 설치·운영 ▶ 긴급 구호품, 이동 구호세탁, 구호급식 지원 ▶ 구호물품 접수 및 배부

비 고

-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.